

보도설명자료 (‘16.5.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서류확인 등 당연한 일을...원전비리 방지대책으로
내놔(‘16.5.11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5.10일 원전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한수원, 한전KPS 등 5개 원전공공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발표
 - 그러나 동 대책은 상당 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옮겨 놓은 데 불과하며 기존대책을 반복한 것이라는 의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산업부가 5.10일 국회에 보고한 ‘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’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종합대책이 아니라,
 - 한수원 등 5개 원전공공기관이 「원전감독법」 제20조에 따라 구매·계약, 조직·인사, 원전시설관리, 국민소통·참여 등 법상 의무준수를 위해 마련한 이행계획임
- 「원전감독법」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책을 법제화 한 것으로, 원전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또는 기관 내규 수준으로 이행해 온 사항을 법적 의무로 강제화하고 이행력을 담보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

- 예를 들어, 그동안 원전공공기관은 원전 품질문서 위·변조 검증 등 정부대책을 기관 내규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었으나,
- 「원전감독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법적 의무로 이행해야 하며, 위반시 산업부의 공식적인 시정조치와 기관장·상임이사 해임 요구 조치가 가능해짐(법 제25조(시정조치 등))

- 금번에 원전공공기관의 ‘운영계획’이 확정·보고됨으로써 기존 대책이 **꾸준하고 일관성있게 실천될 수 있는 기반**을 마련함

- 원전공공기관이 마련한 ‘운영계획’에는 기존 정부대책이 주로 반영되었으나, 전문가 검토(‘16.3.22~31)와 관계부처 협의(‘16.4.29)를 거쳐 **내용이 추가·보완**되었음

- 「원전감독법」 시행으로 원전공공기관이 수립한 ‘운영계획’ 중 기존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음(한수원 예시)

① 법적 의무 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

- (원전시설관리) 운전상태 실시간 점검을 통해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
- (조직진단) 필요시 시행했던 조직진단을 정례화(1회/2년)
- (사이버보안 강화) 협력업체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(‘16) 및 보안실태 평가(2회/년) 실시

② 기존 대책 중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한 사항

- (구매 경쟁기반 조성)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자 발굴을 위해 공급자 등록요건 심사 완화*

* 신청서류 축소(보조기기 기준, 16가지→10가지), 심사기간 단축(4~5개월→1~2개월)

- (순환보직) 순환보직의 원칙*은 그대로 하되, 선호 사업장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한 이동마일리지제** 도입·시행

* 고객접점근무자(공사, 구매, 용역, 설계·시공, 계약 등)는 3년내 이동,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보직은 제외

** 원전 사업소별 마일리지 차등 부여(非선호 사업소 마일리지 상향 부여)

- (품질관리)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전문가 멘토링 확대 시행**

* 멘토링 업체 수: ('16) 21개사, ('17) 23개사

③ 기존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

- (수의계약 최소화) 수의계약을 목표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

- (비리행위 엄중처벌)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기준*을 지속 적용하고, 부패신고자 보호지침** 운영

* (예) 10만원 미만 금품·향응 수수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가능

** 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

- (임직원의 윤리의무) 재산등록(법 제14조), 취업제한(제15조), 영리업무의 금지(제16조) 등은 운영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에 따라 지속 시행

□ 또한 「원전감독법」에서는 산업부로 하여금 “운영계획의 국회보고 → 매년 이행점검 실시 → 점검결과의 대국민 공개, 관계부처 공유”를 의무화하여 관리·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이옥헌 과장 (044-203-5321)
김혜원 사무관 (044-203-5349)